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7. 19(화) 10:30		
배 포 일시	2011. 7. 19(화) 09:30	담당부서	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
담당과장	조원경 (2150-7610)	담당자	이중진 사무관(2150-7612) 진승우 사무관(2150-7614)

제목: 박재완 장관의 FTA 철학 -「제1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」 개최-

-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.19(화) 09:30, 정부중앙청사에서 『제1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』를 개최하여,
- ‘한-EU FTA 발효에 따른 주요 서비스업 대응방향’, ‘아프리카 순방 성과와 경제협력 추진계획’, G20 농업장관 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’, ‘방산수출 활성화 방안’ 등을 논의함

<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FTA의 중요성 >

- 박재완 장관은 7.1일 한-EU FTA 잠정발효를 통해 우리나라 교역의 1/4 이상(25.2%)이 FTA 틀 내*에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면서,

* 칠레, 싱가포르, EFTA, ASEAN, 인도, EU(잠정)와의 6건(43개국)의 FTA 既발효

- FTA를 통한 개방과 경쟁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유효한 성장전략이 될 수 있으며, 한-미 FTA 비준이 시급하고 한-중 FTA 추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

- 특히, 박재완 장관은 FTA(Free Trade Agreement)의 영문 머릿글자를 따서 4가지 측면에서 FTA의 중요성을 강조

① 첫째, FTA는 “Frontrunner To Access” 라고 표현

- FTA 체결에 따른 관세·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당사국들은 상호 시장접근에 있어 선도자(Frontrunner)가 될 수 있으며,
- 칠레 자동차 시장*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를 수 있었던 것처럼, 주요 시장과의 선제적인 FTA 체결은 선점효과를 통해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강조

* 칠레 자동차 시장 점유율(%): ('03년) 韓 16.1, 日 29.5 → (10년) 韓 32.8, 日 28.2

② 둘째, “Fasttrack To Advancement” 라고 표현

- FTA 체결은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의 도입으로 우리 경제·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(Fasttrack)이자,
- 환경·안전·위생 등 주요 분야의 국내 제도 및 규정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함

③ 셋째, “Facilitator To Association” 라고 표현

- FTA 체결은 당사국 간 교역확대 등 직접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넘어 정치·외교·안보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대를 공고히 하는 촉진제(Facilitator)가 될 수 있으며,
- 국가 간 전략적 관계가 나날이 중요해 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부분도 FTA 체결의 중요한 효과임을 강조

④ 마지막으로, “Fruit To All” 라고 표현

- FTA 체결은 수출 경쟁력 강화, 물가하락, 경제협력 증진 등을 통해 가계·기업·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이득(Fruit)을 보는 윈-윈 게임이 될 수 있으며,

- 이 과정에서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일부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을 수 있으나,
- 이러한 문제 때문에 FTA가 주는 혜택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, 적절한 국내 보완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

< 한-EU FTA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>

- 박재완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·자동차·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세계 일류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,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 내놓을 만한 글로벌 기업이 없으며,
 - 무역액 1조 달러를 상회하는 주요 국가(미국, 일본, 독일, 프랑스, 중국)의 서비스 수출 순위가 모두 세계 6위권 이내인데 반해,
 - 금년도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수출 순위는 19위('09년 기준)에 불과한 실정임을 언급
-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, 동남아 등 후발 산업국가로부터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,
 - 선진국 진입의 갈딱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·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함을 강조
- 한-EU FTA는 상품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법률·회계·세무 등 서비스 분야에서 본격적인 개방을 이룬 최초의 FTA로서,
 - 한-EU FTA 발효를 계기로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,

- 특히, 교육·의료 시장의 문턱을 낮추어 해외 교육수요 흡수를 통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,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 논의도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

※ 별첨: 「한-EU FTA 발효에 따른 주요 서비스업 대응방향」

기획재정부 대변인

한-EU FTA 발효에 따른 주요 서비스업 대응방향

'11. 7. 19[화]

기 획 재 정 부	외 교 통 상 부	법 무 부
금 융 위 원 회	문화체육관광부	방송통신위원회
농림수산식품부	국 토 해 양 부	교육과학기술부

순 서

I. 검토배경	1
II. 한-EU FTA 서비스 분야 주요내용	3
1. 전문직 서비스 단계적 개방	3
2. 문화협력	4
3. 전문직 상호인정제도	6
III. 향후 추진계획	7
1. 전문직 서비스 개방에 대한 대응	7
2. 문화협력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	10
3. 상호인정협정 작업반 구성	12
IV. 기대효과	13

I. 검토 배경

- 전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교역액 및 그 비중이 '80년 이후 꾸준히 증가*

* ①세계경제의 상호 의존도 심화, ②경제구조의 서비스화, ③정보통신기술 발달, ④공공부문의 규제완화, ⑤FTA 등을 통한 서비스 거래 활성화 등에 기인

- 서비스 수출액은 '80년 3,970억달러에서 '10년 3조 6,639억 달러로 약 10배 증가 (동기간 상품 수출액은 약 7.5배 증가)
- 서비스 수출 비중은 '80년 16.0%에서 '10년 19.3%로 증가

< 전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규모 > (십억 달러, %)

구 분	1980	1990	2000	2005	2010
상품수출 (비중)	2,034 (84.6)	3,449 (81.5)	6,456 (81.3)	10,489 (80.8)	15,238 (80.7)
서비스수출 (비중)	367 (15.4)	781 (18.5)	1,481 (18.7)	2,496 (19.2)	3,664 (19.3)

※ 자료: 세계무역기구(WTO)

-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FTA 발효는 관세철폐와 함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유도하여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우리 서비스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

- 한-EU FTA 서비스 분야는 대체로 현행법령 수준에서 개방되어 전반적인 영향을 최소화
- 다만, 법률·세무·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, 문화협력* 등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예상되며,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을 검토

* 법률·세무·회계 등의 전문직 서비스의 단계별 시장개방, 한-EU 문화협력 의정서 발효,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 등이 시행될 예정

<참고: 국내 서비스업 개황>

□ (서비스산업 비중) 서비스산업의 GDP(부가가치)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서 정체 (OECD 평균('07) : 69.2%)

* 부가가치비중(%) : ('01)59.0 → ('04)58.1 → ('08)60.8 → ('10)58.2

○ 전체 경제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도('08년, Global Insight)에서도 한국(58%)은 미국(80%), 영국(79%), 독일(72%), 일본(73%) 등에 비해 낮은 수준

-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*이 주요 OECD국가에 비해 저조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R&D 투자**도 부족

* 1인당 노동생산성('08, OECD, PPP) : 미국의 44%, 프랑스의 58%, 일본의 62%

** 민간의 서비스산업 R&D투자 비중(%) : 韓 9.5('09), 英 23.2('06), 美 29.6('06)

○ 다만,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에 근접 (OECD 평균('07) : 68.7%)

* 고용비중(%) : ('01)62.6 → ('05)65.7 → ('08)67.7 → ('10)68.6

□ (서비스수지) 관광, 교육, 사업서비스 부문 등의 경쟁력 미흡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 지속

* 서비스 수지(억불) : ('05)△99 → ('07)△119 → ('09)△66 → ('10)△112

○ 제조업 수출 지원과 연계된 법률·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도 미흡

○ 관광, 유학·연수 등에 대한 내국인의 해외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, 외국인 유입은 부족

○ 내수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을 위한 지원 미흡

Ⅱ. 한-EU FTA 서비스 분야 주요내용

1 전문직 서비스업 단계적 개방

- 법률 서비스는 3단계, 회계·세무 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
 - 단계적 개방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체질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

< 법률 >

1단계(발효시) : 자격 취득국 법률 및 국제공법자문* 허용,
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

* 국내법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는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

2단계(발효 후 2년내): 국내 로펌과의 사안별 업무제휴 허용

3단계(발효 후 5년내): 국내 로펌과의 합작업체 설립 및 합작업체의
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

< 회계·세무 >

1단계(발효시) : 외국회계·세무 자문 허용, 외국 회계·세무
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

2단계(발효 후 5년내): 국내 회계·세무 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·
세무사의 출자 허용

- 관련 국내법령 정비를 통해 개방내용 이행 준비 완료

- (법 른) 외국법자문사법 제정('09.9월)·개정('11.4월)을 통해
1, 2단계 개방내용 법제화*

* 단, 2단계 개방내용은 EU 소속 변호사들에게는 '13. 6. 30부터 적용될 예정

- (세무·회계) 세무사법·공인회계사법 개정('11.6월)을 통해
1단계 개방내용 법제화

2 문화협력

- 시청각 공동제작* 관련 혜택 등 양측 간 문화협력 증진을 위해 문화협력의정서를 FTA 협정문의 일부로 포함

* 의정서상의 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와 EU 제작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투자·제작된 시청각물

- 서비스·설립·전자상거래 챕터의 시청각 분야 적용을 배제하고, 동 분야에 대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문화협력의정서에서 규정
-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문화 활동,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와 관련된 조건의 개선을 위해 협력
- 문화협력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 제작물에 대해 시장접근 관련 특혜* 부여

* 우리나라와 EU 회원국에서 자국물로 인정되어 각 영역에서 쿼터제도 우회 가능

- (애니메이션)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 재정·기술·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5% 이상인 경우
- (영화 등 기타 시청각물) EU 회원국 2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 재정·기술·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0% 이상인 경우

* EU 회원국 국적별 기여도는 각 10% 이상이어야 함

- (혜택부여 기간) 혜택부여는 의정서 발효 후 3년 동안 인정되며, 일방이 3개월 전 종료를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혜택기간은 자동 갱신

〈 문화협력의정서 주요 내용 〉

구 분		주요내용
목적		· 한·EU간 문화활동, 문화상품 및 서비스, 시청각 분야 협력의 틀 구축
문화협력 위원회 및 국내자문 그룹		· 한·EU FTA의 주된 위원회인 무역위원회와 별도의 특별 위원회로서 문화협력위원회 설립 · 문화 및 시청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자문그룹 설치 ※ 의정서 적용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 및 시청각 대표자로 구성하고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
공 동 제 작 인 정 기 준	사업체 국적 요건	· 한국 또는 EU 회원국 각각, 또는 한국 국민 또는 EU 회원국 국민 각각이 소유한 사업체간 공동제작
	사업체 임원 국적 및 거주 요건	· 공동제작을 시행하는 사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자가 각각 대한민국과 EU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그 영역 내에 거주
	EU측 최소 참여국 수	· 애니메이션 : 3개국, · 기타시청각 : 2개국
	양 당사자의 재정, 기술, 예술적 기여도	· 애니메이션 : 35%이상 · 기타시청각 : 30%이상 ※ EU 회원국 국적별 기여도는 10%이상이어야 함
	제3자 참여	·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국, 20%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
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부여기간		· 의정서 발효 후 3년 동안 인정 · 일방이 만료 3개월 전 서면통보 않는 한 자동연장 · 문화협력위원회가 만료 6개월 전 혜택부여에 대한 이행결과를 평가
법령변경시 혜택 정지 조치 관련		· 법령변경으로 공동제작물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- 일방은 두 달 전 통보하고 혜택부여정지 가능 - 정지 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법령변경의 성격 및 영향을 토론 및 검토

□ (문화협력위원회) 문화협력의정서의 이행 관련 사항을 감독·협약하는 문화협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

- 문화협력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분쟁은 FTA 본문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와 별도로 문화협력위원회에서 관할
- 문화협력위원회에 대한 자문을 위해 문화 및 시청각 분야의 대표로 구성된 국내 자문그룹 구성

3 전문직 상호인정제도

□ 한-EU 상호간 전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자격·면허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직능 단체간 논의 및 정보교류 등을 제도화

- 한-EU 양국은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협정*(Mutual Recognition Agreement: MRA) 논의를 추진

* 일방 당사국에서의 학위·자격증등이 타방 당사국에서 동등하게 수락되어 상대국에서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전문직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

- 건축, 수의,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

□ 전문직 서비스 등의 상호인정협정 이행을 위해, 상호인정협정 작업반이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회합토록 규정

- MRA 관련기관이 공동개발한 양국간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(recommendation)를 무역위원회에 제공토록 장려

Ⅲ. 향후 추진계획

1 전문직 서비스 개방에 대한 대응

1. 법률시장

□ 시장 개방에 따라 EU 변호사에 대한 관리·감독체계 확립

- 외국법 자문사 및 법률사무소의 단계적 개방내용 준수 및 불법 자문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·감독 강화

< 외국법자문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>

◇ 외국법자문사

- 외국법자문사의 개인사무소 운영 금지(법 25조)
- 원자격국 명칭에 ‘법자문사’를 덧붙인 직명 사용(다만, 해당 외국 변호사의 원자격국 원어 명칭 등 병기 가능) (법 27조)
예) 영국법자문사(U.K. solicitor, 영국변호사)
- 1년 180일 이상 국내체류의무 부과 (법 29조)
- 법 위반시 자격승인취소 및 등록취소 등의 징계가능 (법 36조)

◇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
- 법상 업무범위를 벗어난 영업활동시 설립인가 취소(법 19조)
-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의무 (법 21조, 시행령 8조)
-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(법 33조)
- 한국변호사 등의 고용, 동업, 겸임 등의 금지 (법 34조)

□ 민·관 역량 결집을 통해 국내 법률서비스 업계의 선진화, 국제화 강화

-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법무자문위원회(11.5월 출범)를 통해 법률 서비스 국제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

- 국내 변호사-해외진출 기업간 연계 확대, 로스쿨생들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 능력 배양 지원
- 중재 산업 육성을 통한 법률서비스 산업의 외연 확대 및 새로운 성장 분야 발굴 모색
- 국제중재사건 국내처리 확대, 국제기구 등과 함께 국제중재규범 개도국 전파 사업 등 검토

2. 회계시장

□ 시장 개방*에 따라 EU 회계사에 대한 관리·감독체계 확립

- * 외국의 대형회계법인(Big4 포함)이 이미 국내회계법인과 제휴를 체결하여 유수 외국회계법인의 추가 국내 진출 가능성은 낮은 상황
- 한-EU FTA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EU 회계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, 매년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

<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>

◇ 외국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

- 공인회계사 자격을 표시할 경우 해당 국가의 명칭을 붙여야하며, 업무계약 체결 전 위촉인에게 업무 범위를 명확히 공지(법40조의11)
- 금융위에 영업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작성하여 제출(법40조의13)
- 금융위 등록서류 등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한글 작성 혹은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(법40조의15)

◇ 외국공인회계사

-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(법40조의14)
-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(법40조의16)
- 동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등의 징계가능(법40조의17)

- ☐ 우리 공인회계법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협정안에 따라 **외국회계법인 및 개인의 국내회계법인 지분 취득 제한***

*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회계법인 출자와 관련하여 개인한도(10%미만), 전체 한도(50% 미만) 적용

- ☐ 국내 회계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-관 합동 회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통해 「회계서비스 선진화 방안」을 금년 내 마련 추진

3. 세무시장

- ☐ EU 세무사의 업무일반 및 협정문 준수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을 통한 관리·감독체계 확립

< 외국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>

◇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

- 외국세무자문사는 자격을 표시할 경우 해당 국가의 명칭을 붙여야 함 (법19조의11)
-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관련서류는 한글 작성 및 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(법19조의3)
- 동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등의 징계가능(법19의14)
-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(법19조의10, 법19조의12)
-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(법19조의12)

- ☐ 시장 개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**외국세무법인 및 개인의 국내세무법인 지분 취득 제한*** 규정을 5년 이내 입법화

*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세무법인 출자와 관련하여 개인한도(10%미만), 전체 한도(50% 미만) 적용

- ☐ 국내 세무사·세무법인의 국제조세분야 경쟁력 확보 및 중·소형 세무법인의 경쟁력 강화방안 지속 강구

2 문화협력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

1. 양 지역간 문화협력 활성화

□ (영 화) EU와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공동제작 프로젝트 개발 지원 및 현지 투자유치 설명회* 개최

* KO-PRODUCTION in PARIS를 '09년부터 유럽 전역의 투자·제작사를 대상으로 개최(금년 11.16~18 예정)

○ (전략시장 진출 활성화) EU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영화 해외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온라인비즈니스센터*(Ko-Biz)를 강화하여 공동제작 프로젝트 기획·개발을 지원

* 해외영화산업, 공동제작 진행상황, 각종 영화통계 등 정보 제공

○ (글로벌 인력양성)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(PD, 해외배급, 스태프 등) 양성

* 영진위 한국영화아카데미 전문 강좌 개설·운영('11.8월~), 프로듀서 국제교류지원(로테르담국제영화제 부설 워크숍인인 '로테르담 랩' 등)

□ (애니메이션) EU와 공동 제작한 우수 애니메이션(공동 TV 시리즈, 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 국제공동제작 포함)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애니메이션 성공 비즈니스 모델 도출

○ (국제박람회 참가 지원) 유럽에서 개최되는 MIPTV('11.4월, 프랑스 칸), MIPCOM('11.10월 예정, 프랑스 칸) 등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국산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을 강화

- 박람회 참가시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

○ (홍보활동) 해외배급, 투자, 공동제작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

□ **(방송 프로그램)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을 통해 방송 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등 국제협력을 촉진**

* 관련 근거: 한-EU FTA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절제1관제5조 시청각 공동제작물

○ **'12년부터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 대상국을 EU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 검토**

* 현재 공동제작 지원대상국 : EFTA 4개국(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), 싱가포르, 캄보디아

2. 문화협력위원회 구성 관련

□ **관련 규정*에 따라 관계부처 및 EU측과 협의하여 발효 시로부터 6개월 내에 문화협력위원회 설립**

* 「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」(대통령훈령)

○ **문화협력의정서에 따라 문화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부 고위 관계자*가 문화협력위원회에 참가**

* EU측과 위원회 구성 세부내용(공무원 직급, 규모 등) 협의 필요

○ **문화협력의정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국내자문그룹을 문화 및 시청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표자로 구성**

□ **문화협력위원회 설치 후 문화협력의정서 관련 분쟁을 독립적으로 관할하는 중재패널 구성을 위한 패널 명부 작성**

○ **문화협력의정서에 따라 총 15인(우리측 5인, EU측 5인, 제3국인 의장후보 5인)으로 구성**

3 상호인정협정 작업반 구성

□ 관계부처 및 EU 측과의 협의를 통해 연내 상호인정협정 작업반 구성 추진 (협정문상 발효 후 1년 이내 회합토록 규정)

① 제1차 한·EU 무역위원회(10월 추진) 개최시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리측 상호인정협정 작업반 구성안* 마련

* 소관부처 책임 하에 산하기관, 관련 전문가 협회 등 유관기관의 작업반 참여를 추진하여 상호자격인정 권한을 보유한 기관 간 논의를 촉진·지원

② 관련 규정*에 따라 FTA 추진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상호인정협정 작업반을 포함한 FTA 산하기구 구성 확정

* 「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」(대통령훈령)

③ EU 측과 작업반 구성 및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연내 상호인정협정 작업반 구성 완료

- 제1차 한-EU 무역위원회에서 채택 예정인 “무역위원회 구성·운영 관련 의사규칙”에 근거하여 상호인정협정 작업반 의사규칙(안) 마련

- 제1차 상호인정협정 작업반 개최시 작업반 의사규칙(안) 의결 추진

□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호인정협정 작업반 설치 후 양측 관심분야*를 중심으로 전문직 상호인정 추진

* 예) 한-미 FTA에서 논의된 분야(건축, 수의, 엔지니어링)

IV. 기대 효과

□ 서비스 및 제조업 수출 역량 강화

- 그간 서비스산업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하에 개방과 경쟁 도입이 미흡하였으나 한-EU FTA를 계기로 서비스 사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여건 조성
- 제조업수출 지원과 연계된 법률, 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 업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

□ 사업서비스, 문화콘텐츠, 전문직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창출

- 저부가가치 업종 위주의 고용에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나아가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유도

□ 문화협력을 통한 국가브랜드 이미지 향상

- EU와의 공동제작 활성화로 한국적 특성과 감성을 내포한 영화, 드라마 등 시청각물의 유럽시장 개척 효과 기대
- EU의 경우 자국 영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시청각물 제작자들의 제작비 조달에도 기여
- 해당진출국의 시청각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세금감면 및 보조금 수급 등의 수혜이외에 장르별 쿼터제도 우회